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900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규정
- 김포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강화
-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,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1/2에서 2/3로 확대하여 심의회 공정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정보공개의 원칙, 행정정보의 공표, 공개방법, 비용의 부담(안 제3조 ~ 제6조)
- 다.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- 라. 정보공개심의회 구성, 임기, 회의 운영 등(안 제7조 ~ 제10조)
- 마. 정보공개책임관 지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10. 13. ~ 2021. 11. 02.(<u>20일</u>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분석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의견 있음(별첨)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

나) 경 기 도 : 총무과

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행정정보"란 김포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 - 2. "공개"란 공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 ·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공개대상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김포시와 그 소속기관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
 - 다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4. "청구인"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개대상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 각

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.

- 제5조(공개 방법)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·시청하 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공개대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 -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 - ④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.
- 제6조(비용의 부담)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·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「김포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
 - 2. 그 밖에 김포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.
 - 1.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
 - 2.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안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
 - ③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제8조(심의회의 구성 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.
 -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.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- ⑥ 시장은 심의회를 구성할 때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.
 - ⑦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9조(심의회 회의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.
 -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,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0조(비밀준수)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.

- 제11조(정보공개책임관) 영 제11조의2에 따른 김포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 - 1.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
 - 2. 김포시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 · 체계적 관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행 정 과
입 안	실·과·소장 성 명	행정과장 신 승 호
	담 당 성 명	서무후생팀장 안 태 환
사	담 당 자 전 화	지방행정서기 홍 은 영(☎2037)